

**파 주 캠프 에 드 워 즈 도 시 개 발 사 업**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2. 3**

**주식회사 에드워즈뉴시티**

#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1.1 계획의 목적 및 배경

- 본 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발제약으로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도모 필요성이 대두됨
-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 및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025년) 개발로 개발잠재력이 높아진 파주 북부지역 개발여건 변화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도시개발을 통한 인프라구축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친환경 복합주거단지 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잠재력 극대화와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파주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대상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대상규모	면적 : 677,525㎡(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 250,000㎡)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별표2]

<표 1.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평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대상규모	면적 : 677,525㎡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별표3]

###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2006.09.0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 2008.0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17) 확정  
- 캠프에드워즈(파주시), 캠프자이언트(파주시), 캠프라과디아(의정부)
- 2019.03.27 :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파주시)
- 2019.07.05 :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 2020.11.30 :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 2021.08.17~08.3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1.09.17~10.05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19일간)
- 2022.01.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및 협의완료

### 1.4 계획의 내용

- 가. 사업명 : 파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 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
- 다. 계획면적 : 677,525㎡
- 라.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에드워즈뉴시티
- 마. 승인기관 : 파주시
- 바.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 사업비 : 6,347억원



(그림 1.4-1)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4-2) 계획지구 위성사진



(그림 1.4-3) 계획지구 현황사진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아. 계획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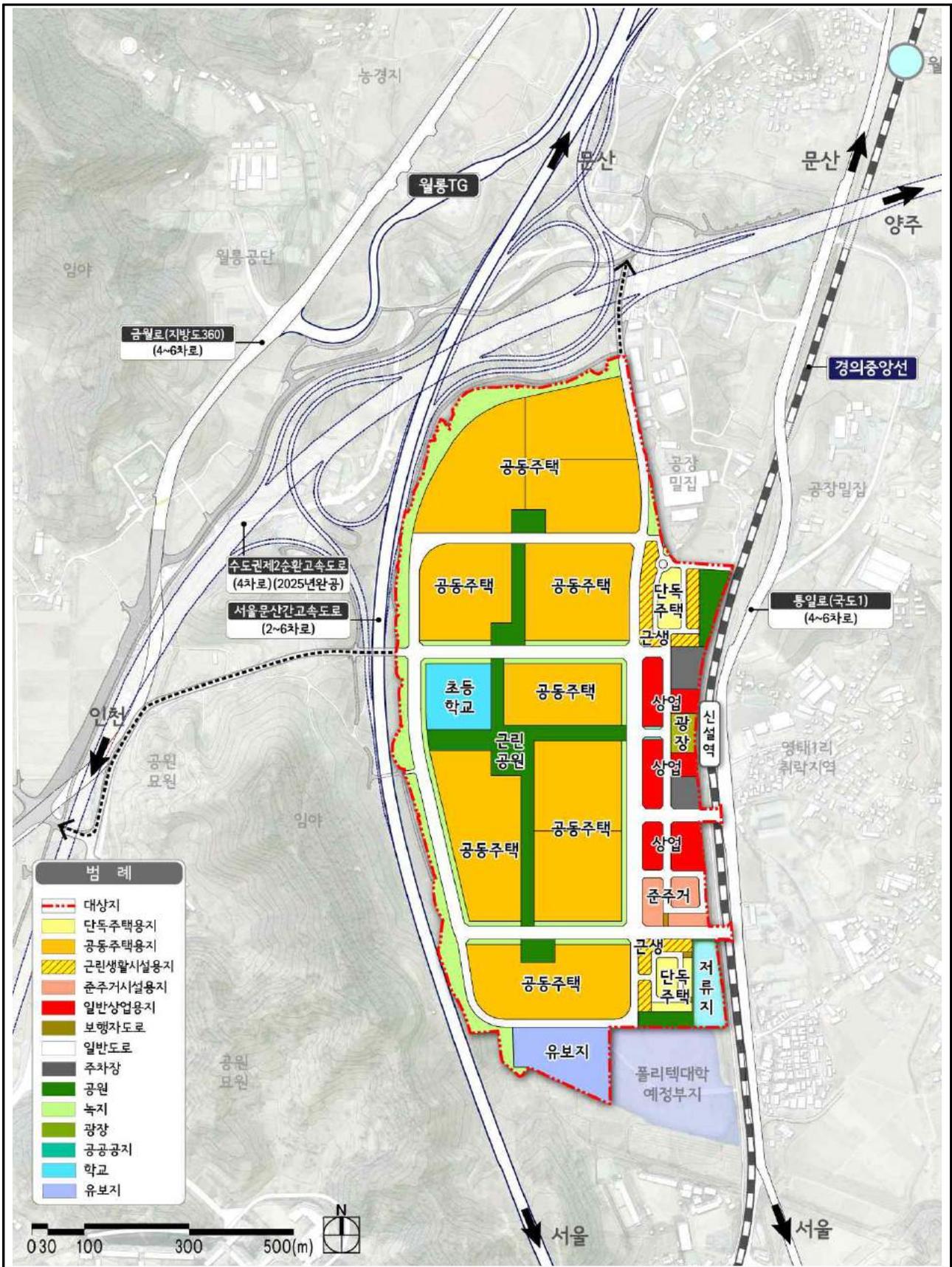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 계획지구의 면적 677,525㎡, 계획세대수 7,338세대, 계획인구 17,610인

- 주거용지 371,190㎡, 상업용지 24,811㎡, 공공시설용지 281,524㎡ 등으로 계획되어 있음

<표 1.4-1>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77,525	100.0		
주거용지	소계	371,190	54.8		
	단독주택용지	10,936	1.6		
	공동주택용지	336,146	49.6		
	근린생활시설용지	15,307	2.3		
	준주거시설용지	8,801	1.3		
상업용지	소계	24,811	3.7		
	일반상업용지	24,811	3.7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계	281,524	41.5		
	도로	도로	112,208	16.5	
		보행자도로	610	0.1	
	도로	111,598	16.4	철도(경의중앙선)중복결정 (1,844㎡)	
	주차장	8,201	1.2		
	공원·녹지	공원·녹지	121,179	17.9	
		공원	59,453	8.8	저류지 중복결정 (8,938㎡)
		녹지	61,726	9.1	
	광장	3,600	0.5		
	공공공지	336	0.1		
	학교	16,000	2.4	초등학교	
	유보지	20,000	2.9		



(그림 1.4-4) 토지이용계획(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행한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 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의견수렴의 개요

#### 가. 주민공람 및 공고

##### 1) 공람

- 공람기간 : 2021.11.10.~2021.11.26.(17일간)-다른 법령에 따른 주민공람
- 공람장소 :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 월릉면 행정복지센터

##### 2)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파주시 공고 제2021-2400호)
  - 파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각각 게재
  - 전국 일간지 : 시대일보(2021년 11월 10일)
  - 지방 일간지 : 경기일보(2021년 11월 10일)

#### 나. 주민설명회

- 본 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절차에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주민설명회 절차를 생략함

#### 환경영향평가법

#####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1년 11월 27일 ~ 2021년 12월 2일(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별첨 1] 주민공람공고(공고문)

파주시 공고 제2021 - 2400호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승인 신청된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0.

파주시에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 사업명 : 파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 구역명 :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
- 면적 : 677,525㎡

2. 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행자 : (주)에드워즈 뉴시티  
- (주소) 파주시 와석순환로 515번길 61, 송림메디컬프라자 901호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주민의견 제출서(공람장소에 비치)
- 파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http://www.eiass.go.kr)) 게재

4.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 공람장소 :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 (파주시 시청로 47, 3층 / 031-940-5359)  
월롱면 행정복지센터(파주시 월롱면 엘지로17)
- 공람기간 : 2021. 11. 10. ~ 2021. 11. 26. (17일 간)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내 비치)

6.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2] 주민공람공고(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p>■ 시대일보</p>	<p>■ 경기일보</p>
<p>파주시 공고 제2021 - 2400호</p> <p><b>「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b></p> <p>「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승인 신청된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 11. 10. <b>파 주 시 장</b></p> <p>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 사업 명 : 파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 구 역 명 :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                      ○ 면 적 : 677,525㎡                      2. 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에드워즈 뉴시티                      - (주소) 파주시 와석순환로 515번길 61, 송림메디컬프라자 901호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주민의견 제출서(공람장소에 비치)                      ○ 파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게재                      4.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 공람장소 :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 (파주시 시청로 47, 3층 / 031-940-5359) 월롱면 행정복지센터(파주시 월롱면 엘리로17)                      ○ 공람기간 : 2021. 11. 10. ~ 2021. 11. 26. (17일 간)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내 비치)                      6.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p>파주시 공고 제2021 - 2400호</p> <p><b>「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b></p> <p>「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승인 신청된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 11. 10. <b>파 주 시 장</b></p> <p>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 사업 명 : 파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 구 역 명 :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                      ○ 면 적 : 677,525㎡                      2. 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에드워즈 뉴시티                      - (주소) 파주시 와석순환로 515번길 61, 송림메디컬프라자 901호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주민의견 제출서(공람장소에 비치)                      ○ 파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게재                      4.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 공람장소 :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 (파주시 시청로 47, 3층 / 031-940-5359) 월롱면 행정복지센터(파주시 월롱면 엘리로17)                      ○ 공람기간 : 2021. 11. 10. ~ 2021. 11. 26. (17일 간)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내 비치)                      6.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별첨 3] 주민공람공고(정보통신망)

파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발행일자	발행처	담당자	문의처
2021.11.10	파주시	환경영향평가팀	031-750-2823

## 2.3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결과

### 2.3.1 관계기관 의견 수렴결과

<표 2.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b>I. 사업개요</b>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 번지 일원	-	
	○계획내용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	
	○계획면적 : 677,525㎡	-	
	<b>II. 초안의견</b> <b>1. 총 괄</b> ○본 계획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 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 677,525㎡)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서(초안) 검토의견임.	-	
	○금회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 위계획과의 부합성, 인구증감 추이, 개발 현 황 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 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주택 수요·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상위계 획과의 부합성, 인구증감 추이,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여 본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계획지구 내 참나무류가 주로 분포하는 식생 보전등급 III등급지역은 도심지 내 산림으로 서 생태계 유지 및 수환경 보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가급적 원형보전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계획지구내 분포하는 식생보전등 급 III등급 지역을 고려하여 연계 성 있는 녹지계획, 공원계획 등을 수립 하겠음	반영
○수질, 대기(악취 포함), 토양, 소음·진동 등의 환경현황 조사 시 조사 방법(지점 선정, 예 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환경 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 시)」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 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수록·제시 - 주변에 계획·추진중인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공사시기가 중복될 시 누적하여 영향 예측	○환경현황 조사시 다음과 같이 조 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음  -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 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제시 - 주변에 계획·추진 중인 개발계획 을 조사하여 공사시기가 중복될 시 누적하여 영향 예측하여 제시 하겠음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음	반영
	○본 사업의 선행 추진경위와 추진과정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 그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추진경위 중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반영
	<b>2. 세부 의견</b> <b>가. 계획의 적정성</b> <b>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b> ○상위 및 관련 계획·정책과의 연계성과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상위 및 관련 계획·정책은 최신 자료를 이용하고, 파주시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기준 등과의 연관성,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의 적정 반영여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가장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상위 및 관련 계획·정책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등을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겠음	반영
	<b>나. 입지의 타당성</b> <b>1) 자연환경의 보전</b> <b>가)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b> ○계획지구 북측으로 인접하여 한북정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한북정맥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상세 지형도를 이용하여 한북정맥 능선축을 분석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도면으로 작성 - 한북정맥과 계획지구와의 이격거리를 명시 - 한북정맥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조사결과 제시	○계획지구 북측에 한북정맥이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지조사시 해당구역은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공사 중인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 한북정맥에 해당되는 지역의 핵심구역, 완충구역, 계획지구와의 이격거리, 토지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계획지구 내 참나무류(갈참나무, 상수리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식생보전Ⅲ등급 산림은 도심지 내 야생생물 보존, 생태계 유지 및 수환경 보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형보전 또는 공원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계획지구내 분포하는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지역을 고려하여,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지역과 연계된 녹지계획, 공원계획 수립등을 검토하겠음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p>○ 문헌조사를 통해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된바, 사업에 따른 종별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p> <p>- (조류) 문헌조사에서 법정보호종 조류 20종의 서식이 확인(146~148쪽)되었으나 현지조사 시(21.08.02~04) 발견되지 않음. 조류는 이동성이 큰 종으로 계절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월동 조류(11월~2월), 번식조류(4~7월)의 경우 조사 적기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함.</p> <p>- (양서류) 문헌조사에서 사업지구 인근 멸종위기 양서류(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가 발견됨(148쪽). 사업대상지는 농경지, 경작지 및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맹꽁이의 서식 가능성이 높고,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도 계획지구 내 서식지를 동면지 등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적정시기에 맞춘 양서류 전문가와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법정보호종에 대한 서식 여부를 재확인(함정트랩 이용 권장)하고 서식이 확인되면 분포위치, 서식 밀도(개체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함.</p> <p>※「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 참고</p>	<p>○ 현지조사시 법정보호종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헌조사시 법정보호종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종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p> <p>- 문헌조사시 확인된 겨울철새류에 대하여 동계조류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제시하고, 번식조류는 적기에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하겠음</p> <p>- 양서류 출현시기를 고려하여 전문가를 통한 조사를 수행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하겠음</p>	
	<p><b>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b></p> <p>○ 계획지구는 북측으로 0.1km 인접하여 신한북정맥이 위치하고 지형 및 경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원형보전을 권고하고 있는 300m 이내 지역(주요정맥)에 해당하므로, 정맥 300m 이내 지역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p>	<p>○ 계획지구 북측에 한북정맥이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지조사시 해당구역은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공사 중인 지역으로 조사되었음</p> <p>- 한북정맥 핵심구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지구의 녹지조성시 연계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p>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b>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b> ○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IC를 포함한 인접 주요도로 가시지점과 지형 변화로 인한 사면·옹벽 발생지점에 대한 조망점을 추가하여 경관영향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현 단계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로 계획이 확정된후 환경영향평가시 계획지구 내 사면 및 옹벽발생부분에 대한 경관 발생 영향을 제시하겠음	반영
	○ 옥상상층부의 강조색 적용시 건물 층고에 의한 위압감 상승이 우려되는바, 경관영향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248쪽과 250쪽의 예측적용 내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파주시의 색채 가이드라인은 존중하되, 건축물의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 계획 필요(색채계획에서 주조색, 강조색, 보조색을 명확하게 선정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영향 검토)	○ 건축물 색채계획 수립시 상층부 강조색과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신설역에서 배면부를 조망했을 때를 가정한 통경축 확보가 필요하므로, 신설역 전면부 조망축 확보방안(광장 확대 등)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신설역으로부터 광장으로의 통경축에 대한 경관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b>라) 수환경의 보전</b> ○ 사업자는 사업지구 운영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신규 정수장으로부터 공급할 계획이며, 오수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금촌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시설 관리청과의 협의결과(문서 등), 관련 상위 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반영 여부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용수공급 및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상수공급 및 오수처리 관련 협의 결과 및 관련 상위계획 반영 여부 등의 자료를 제시하겠음	반영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491호, 2020. 12.28.)」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할당부하량 협의 관련 증빙서류를 평가서(본안)에 첨부하여야 함.	○ 현 단계에서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부하량 할당 연기계획서를 제출한 후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을 계획임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p>2) 생활환경의 안정성</p> <p>가) 환경기준 부합성</p> <p>&lt; 대기·악취 &gt;</p> <p>○계획지구의 서쪽은 공장지역이며 동쪽 또한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지구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시설의 공정 및 배출오염물질·악취물질 등을 조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결과 제시</li> <li>- 악취영향 현황 파악을 위해 주변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구 인근 공장 시설의 공정 및 배출오염물질·악취물질 등의 조사내용을 제시하겠으며, 계획지구에 미치는 영향예측을 실시하겠음</li> <li>○주변지역 악취관련 민원을 제시하겠음</li> </ul>	반영
	<p>○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조사를 가을철 1일 1회 실시하였으나, 본 계획은 추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대기질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개시 1일 전부터 강우가 없는 날을 정하여 사계절 3일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을철이 아닌 계절에 3일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하겠음</li> </ul>	반영
	<p>&lt; 토양 &gt;</p> <p>○사업부지 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완료된 부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341쪽에 제시된 검증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검증 확인 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구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결과에 대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겠음</li> </ul>	반영
	<p>&lt; 일조장해 &gt;</p> <p>○금회 계획에서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용적률 250%의 고밀도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단지 외부 및 내부 일조영향이 우려되는바, 일조 문제는 계획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를 고려한 계획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 및 내부일조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li> </ul>	반영
	<p>○구체적인 건축물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현 계획에서 주어진 조건(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을 고려한 프로토타입 건축물계획을 마련하여 일조장해 발생 수준을 분석하고, 경관시뮬레이션 분석에서 활용된 건축물계획과 동일한 계획모델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치계획을 토대로 일조장해 모델링을 실시하여 관련 내용을 제시하겠음</li> </ul>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p>&lt; 소음·진동 &gt;                      ○철도 소음 현황조사 측정지점을 공동주택 예정지(블럭별)별로 추가하여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운영시 공동주택(저층·중층·고층으로 구분)에 대한 철도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여 주거입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p>	<p>○철도 소음 현황조사를 공동주택 예정지(블럭별)별로 추가 측정하여 제시하고, 운영시 철도 소음·진동 영향예측 검토 결과를 제시하겠음</p>	반영
	<p>○운영 시 3D 모델링(Soundplan)을 활용한 합성소음(도로+철도) 예측결과 일부 지점에서 목표기준을 초과하여(367~369쪽), 이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방음벽 및 복층 저소음포장도로를 적용하여 전 지점에서 목표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복층 저소음포장도로의 저감방안의 효과인-9dB(A)는 포장공사 직후의 최대 소음저감효과 적용 결과로써(380쪽) 지속적인 소음저감 효과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저소음 포장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전협의 보증 내용을 파악하여 효과 등을 평가하여 제시</li> <li>- 소음저감효과(-9dB(A))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저감 성능이 9dB보다 감소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또는 대안) 제시</li> <li>※ 복층 저소음포장의 소음 저감 성능 효과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이 아닌 국제기준(ISO 11819 등) 또는 KS를 참고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li> </ul>	<p>○저소음 포장 및 유지관리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후 관련내용 제시하겠음</p>	반영
	<p>○계획지구 외부의 철도(경의중앙선) 및 도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통일로)에 의해 장기적인 거주자의 소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영향범위 예측이 누락되어 있어 소음환경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맞도록 사업시행 후 최대 소음도가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지구 내의 수평, 수직적인 공간적 소음 영향범위를 제시하고(상세한 건축물 배치 등에 따른 각 동, 층별 소음도 예측이 아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안(토지이용계획 변경, 층수 제한, 상업시설 등의 전면배치 등)을 제시하여야 함.</p>	<p>○다각적인 대안에 대해 소음검토 결과를 제시하겠음</p>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p>○ 계획지구 외부도로로 인한 영향예측만을 수행하였으나(362쪽), 대규모 거주지 및 신설역으로 인하여 내부도로로 인한 소음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부도로를 포함하여 영향예측을 제시하여야 함.</p>	<p>○ 내부도로에 대한 소음예측결과를 제시하겠음</p>	반영
한강유역 환경청	<p><b>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b>                      &lt;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 &gt;                      ○ 금번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은 사업면적이 677,525㎡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촉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촉법」제7조는 동법 제6조제1항(도시개발)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도시개발)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와 부지확보 계획 등을 금번 단계에서 확인하여 제시하여야 함.</li> <li>- 상기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이용계획, 대기질·악취, 위생공중보건 등 다수의 항목에서 추가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본 단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여 제시하여야 함.</li> <li>- 「폐촉법」제6조제1항에 따라 처리계획 수립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실시 여부를 제시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입지정보 및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li> </ul>	<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계획지구 면적 및 대상여부 등을 검토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등에 관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과를 제시하겠음</p>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p>○「폐촉법」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관할 지자체로 납부할 계획일 경우 「폐촉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폐촉법」 제6조제2항 적용 대상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p> <p>※ 2020년 12월 9일 이후 수립된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지정 고시 이전인 도시개발사업은 상기법 대상(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질의 답변)</p> <p>※ 2020년 12월 9일 이전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된 사업은 개정 이전 법 적용</p> <p>- 「폐촉법」제6조제2항의1에 대한 근거는 관할 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최근 3년간 처리량 및 사업 운영년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폐기물발생 추가량의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유무를 제시</p> <p>- 「폐촉법」제6조제2항의2에 대한 근거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가능여부를 관할 지자체장의 확인서 제시</p> <p>- 「폐촉법」제6조제2항의3에 대한 근거는 관할 지자체의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실시계획 상 추가 조성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서 제시</p> <p>- 「폐촉법」제6조제2항의4에 대한 근거는 관할 지자체 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조성 필요성에 대한 확인서 제시</p>	<p>○「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의 설치, 운영비용을 관할 지자체로 납부할 경우 그와 관련된 근거 서류 및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등에 대해 제시토록 하겠음</p>	반영
	<p>○다만,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금번 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기 힘들 경우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폐촉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p>	<p>○관할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음</p>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p>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p> <p>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p>○사업지구는 대부분 산지와 경작지 등 자연지반으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개발 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 유지를 위한 생태면적의 확보가 필요함에도, 금회 사업은 공원·녹지 비율 17.9% 이외의 생태면적을 달성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바, 목표·계획생태면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태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li> <li>- 전략환경평가 단계에서 개발대상지의 토지피복유형을 기준으로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용도 지역별 목표생태면적률(권장달성목표 40% 이상)*을 제시*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 2016) 참고</li> <li>- 목표·계획 생태면적률을 각 토지이용(공동주택용지, 공원·녹지, 도로 등)에 적용할 생태면적 확보 수단(대지 내 조경, 옥상·벽면 녹화, 투수성 포장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li> <li>- 건축계획 시 목표생태면적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자연지반녹지로 구성된 공원·녹지 면적을 상향 조정</li> </ul>	<p>○목표 및 계획 생태면적률 달성을 위한 방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각 용도·유형별 최소목표 녹지율을 정하여 생태면적률 40%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공동주택 단지 내 녹지공간, 포장계획 등의 세부계획 수립시 목표생태면적률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할 계획임</li> </ul>	반영
	<p>나) 인구·주거</p> <p>○도시개발사업의 주택 공급량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현재 인구증감 추이, 주변 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금회 평가서는 수도권 내 개발사업들의 평균 개발밀도를 조사한 후 해당 밀도에 부합하는 사업지구 내 계획인구를 도출하여(482쪽) 적절성을 검토하기 어려운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주택 수요·공급의 적정성을 면밀히 평가하여야 함.</p>	<p>○계획지구내 주택 수요·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파주 도시기본계획 상 동 생활의 계획인구, 주택개발 현황, 인구이동, 주택보급률 관련 자료를 제시하겠음</p>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주 도시기본계획 상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생활권의 연도별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 간 비교</li> <li>- 동 생활권 내 추진 중인 주택개발 현황(면적, 계획인구 등)</li> <li>- 동 생활권 내 추가 인구 유입 요인(산업용지 개발 등) 및 규모</li> <li>- 동 생활권 내 최근 5년간 주택보급률 및 주택사업 분양률</li> </ul>	-	
	<p><b>3. 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li> </ul>	○본안작성시 초안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li> <li>-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li> </ul>	○본안 작성시 관계기관의 검토의견과,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종합하여, 반영내용과 반영여부를 제시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야 함</li> <li>-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능한 정량화한 데이터를 제시하겠음</li> <li>-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 기재시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에 대한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여야 함. 끝.</li> </ul>	○본 보고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겠음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경기도 환경정책과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 획 명 : 파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li> <li>○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li> <li>○규 모 : 677,525㎡</li> <li>○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li> <li>○시 행 자 : 주식회사 에드워즈뉴시티</li> <li>○승인기관 : 파주시</li> </ul>		
	<p>□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구의 경우 과거 주한미군 부지로 사용되었던 지역으로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정화 완료 후 부지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지역을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추가하여 현황조사를 시행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구를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추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정화 이력이 있으므로 지하수 흐름을 고려한 조사지점을 설정하여 지하 수질을 추가로 조사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수 흐름을 고려한 지하수질 측정 지점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으로 공사 시 소독시설 설치 등 차량, 작업자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염병의 물리적 전파를 차단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차량 및 작업자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사를 실시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문산간고속도로 인접부인 계획지구 서측에 수목별 식재 비율은 알 수 없으나 완충녹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향후 계획 수립 시 소음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상록수 등 큰 나무 중심으로 다층 식재를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훼손 수목량 19,891주 중 이식 수목량은 376주로 약 1.9%에 불과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경계획 수립시 서울문산고속도로로부터 인접한 계획지구 서측부분에 대하여, 소음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해 수고가 높은 상록수 등을 계획하겠음</li> <li>- 이식계획 수목의 경우 수목의 형태 및 생육상태에 따라, 적지 적소 식재가 되도록 계획하겠음</li> </ul>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경기도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소음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로 인한 저감대책으로 도로의 복층저소음포장을 제시하였음. 해당 구간의 포장 주체와 운영 시 관리주체(공극 막힘에 따른 청소, 소음 측정 및 현장 투수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시기 바람</li> <li>- 사업 특성상 관리주체가 설치자와 상이하거나 운영 중에 변경되는 경우 본 사항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음복층포장 관련 관리지자체와 협의후 관련내용 제시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침사지 용량 산정 및 준설계획 수립 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을 고려한 우수유출량을 설정하여 토사 유출 및 범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을 고려한 우수유출량을 설정하여 임시침사지 용량 산정 및 준설계획을 수립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계획단계에서 실시설계가 수립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어려운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향성, 목표를 설정·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기의 경우 고효율조명(LED)을 최대한 사용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향성, 목표 등을 설정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차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설치 비율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람</li> <li>-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친환경 교통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주차공간 확보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검토내용을 제시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공사 시 인근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에 대한 상시 측정기기 및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기, 소음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목표 기준 초과 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대기 및 소음 상시 측정기 및 전광판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목표 기준 초과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본 계획시행에 대한 주민들이 의견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이행하겠음</li> </ul>	반영
파주시 환경보전과	- 의견없음	-	

### 2.3.2 주민의견 수렴결과

<표 2.3-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의견 제출자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번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중 사업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확인됨</li> <li>○본인은 토지주로서 수용방식에 반대하며, 환지 또는 혼용방식을 요구하며, 환지방식으로 수용시 개별환지인 단독주택, 집단환지인 아파트로 받기를 원하며, 민간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용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반대하며, 토지주들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지방식으로 요구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캠프 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3월 파주시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이후 SPC(주식회사 에드워즈뉴시티)를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용지(아파트용지 등), 상업용지, 기반시설용지(도로, 공원 등) 등을 조성하고 조성된 택지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임(아파트를 비롯한 건축사업은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개별 사업주체가 별도 추진할 예정임)</li> <li>-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대상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진행할 예정이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될 예정임</li> </ul>	미반영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li> <li>○저는 월롱면 영태리 일대 에즈워즈 주변 개발구역내에 문중선산과 시조 묘소를 모시고 있는 영광김씨종중의 파주선영 보존위원회 대표 김○○입니다</li> <li>○위의 도시개발로 인해 멀리 고려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700여년 간 지켜온 선영과 시조 묘소의 이전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문중은 그동안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이에 대한 문중 입장과 대응방안을 정리한 후 지난 2019년 6월경 파주시장님께 탄원서를 올린바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 사업은 대상지의 개발잠재력 실현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기부채납하는 근린공원의 조성목적에 감안할 때, 토지이용계획상 대상지 중심부 중앙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해당 묘소는 문화재가 아닌 일반묘소로서 공원 내 입지(존치)는 불가함</li> </ul>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의견 제출자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김○○	<p>○탄원내용은 지역발전과 공공이익을 위한 파주시의 도시개발사업에 협력한다는 의지에 임야와 전답 등 문중재산을 부득이 수용에 응하되 시조 묘소만은 고려조에서 정승판서를 지낸 고위 인사의 유택이 700여년간 한곳에 변함없이 존속해온 역사성으로 보거나 풍수지리상 명당으로서 수만명 후손의 안녕과 번영을 한결같이 지켜온 성소적 가치로 보아 원위치에 보존함으로써 우리 종족의 영생을 도모함과 아울러 역사 유적의 보전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에도 기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p> <p>○그 때 파주시는 우리 문중의 요청을 긍정적 시각으로 수렴하면서 아직은 개발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확정이 되면 시가 적극 개입하여 개발업자로 하여금 문중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주셨습니다(파주시 회신문 별첨)</p> <p>○한데 이번에 공시한 파주시 에드워즈시티 개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구역 배치도에 의하면 현재 시조 문경공 묘소가 위치한 일대는 초중교 시설부지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중의 요구사항은 전면 묵살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문중은 현대SPC측에도 요구사항을 전달한 결과 모든 권한은 파주시에 속함으로 자신들은 파주시 결정에 따르겠다는 반응이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p> <p>1. 문경공 김태용 묘소는 현 위치에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단, 단지내에서의 근거리 이동배치는 협의 가능합니다) 초안 상 학교가 들어설 지점은 현재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각종 차량이 소음을 일으키며 분주히 고속질주하는 상황에서 도로에 바짝 붙여 학교를 세우는 것은 안전 또는 학습여건상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조 문경공 묘소가 위치한 현재의 지형을 보면 서북쪽으로 월롱산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그 한가닥 지맥이 동쪽방향으로 뻗어 내리다가 전방에 개활지를 두고 멈춘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p>	<p>○학교용지는 상업시설용지 및 신설 철도역사 등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최대한 이격 되고, 주변 주택용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면학환경 조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임</p>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의견 제출자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김○○	<p>따라서 개발구역 내에 녹지와 공원용지를 확보하려면 이곳이 유일한 최적의 후보지임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도로를 인접하여 학교를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거듭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데 도로변 녹지에는 산소를 존치하고 그와 격리된 곳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p> <p>2. 6.25사변 이전까지 묘소 인근에는 자연마을이 존재하였으며, 그곳 거주 후손이 선영을 지켜왔으나 전란 때 소개당하여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그 점을 감안, 이곳이 대단지 주거시설로 복원되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 문중에 산소보존용시설(재각 또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합니다</p> <p>3. 파주시가 약속한대로 개발자로 하여금 문중의 최소한의 요구를 받아들일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4.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후유증이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워 700여년간 한 문중이 충효사상 가치를 생명처럼 지키며 보존해온 성소가 소수의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p> <p>○우리문중은 이러한 비상식적 현상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투쟁도 불사할 각오입니다.</p> <p>○끝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전진기지이며, 징검다리인 파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거듭 기원드립니다</p>		
김○○	<p>○구 마을(영태1리-5리)지역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 필요</p> <p>-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 구마을 주민들을 위한 도시환경개선 내용은 전혀 없음</p> <p>- 구 마을지역의 일정부분을 상업시설 등으로 지정하고 구 마을지역 정비등을 함께 실시해야 그 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개발제약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복리증진이며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될 것임</p> <p>- 철길과 1번 국도(통일로)를 사이에 두고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으로 양분되면 위화감 조성과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역행하는 사업이 될 것임</p>	<p>○금회 개발사업의 범위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행정안전부)”과 2019년 3월 “파주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제안 및 사업자 공모” 당시 제시된 “캠프에드워즈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범위를 반영하여 계획하였음.</p> <p>○개발계획에 반영된 신설 철도역사,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구역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영태리를 비롯한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시설의 이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p>	미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의견 제출자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길과 1번 국도(통일로)를 사이에 두고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으로 양분되면 위화감 조성과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역행하는 사업이 될 것임</li> <li>○ 중학교 개설필요</li> <li>- 수용가구 7,338세대의 매머드 대단지 계획 도시임에도 단지 초등학교만 개설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개발계획임</li> <li>- '21.9월 발표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중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음</li> <li>- 초등학교만 개설시 중학교를 염두에 둔 입주민들에게 많은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대상지 내 중학교 용지를 계획하여 사업 제안하였으나, 인근의 기존 중학교(광일중학교, 문산중학교 등) 시설 증·개축 등을 통해 학생 배치하는 내용으로 파주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파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재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임</li> </ul>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주시의 위 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에 반대합니다</li> <li>○ 파주시는 2006.10월 이후 위 사업예정부지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영터리 행정행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2008.3월에 주민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화학당에 사업계획승인을 일사천리로 내줘 강제로 사유지를 수용하려 시도하였고, 2010년에도 이화여대에게 사업부지를 미군공여지로 축소하는 계획을 승인해 주면서도 사유지는 계속하여 자유로운 재산권행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li> <li>○ 이화여대가 학교부지를 미군공여지로 축소하려 했는데, 왜 파주시는 사유지를 계속해서 몰아매고 있는지요?. 2010.8월에 ○○대학교 파주캠퍼스 건립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그때 제3의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했는지요? 사업신청자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령을 대상으로 승인을 내주는 해괴망측한 권한이 파주시에 있는지 묻고 싶군요</li> <li>○ 파주시는 계속하여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터리 일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사업시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대상지의 개발잠재력 실현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한 토지보상 추진 및 충분한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함</li> </ul>	미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의견 제출자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느날 갑자기 개발행위와 건축행위를 막고, 이화여대에게 재빠르게 승인을 내주고 강제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한 점, 이화여대 건립이 무산됐는데도 개발계획을 취소하기는커녕 반칙을 써가며 약 13년간 계속하여 재산권을 막는 행위, 금번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방식을 굳이 사용·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별한 보상에 해당되는 것이라 여기는지요</li> <li>○토지주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교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전을 즈음하여 군사목적용 이유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을 원상회복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집성촌을 이뤄 거주하며 건축행위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산권행사를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지주들이 계속하여 누려온 당연한 것들입니다</li> <li>○파주시는 토지주에게 특별한 보상 운운하지 말고 반백년 재산권행사를 제한해온 미군공여지가 그 목적을 다한 만큼 사업예정지역 사유지를 그 이전의 상태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파주시의 균형있는 목민행정을 기대합니다</li> </ul>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폴리텍 부지옆에 시민공원을 만들어 주민들과 파주시민의 힐링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영태5리 주민들 의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폴리텍대학 예정 부지 옆의 유보지(부지면적 20,000㎡)는 공공환원계획에 따라 파주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 향후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별도 개발 추진할 예정임</li> </ul>	미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의견 제출자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이○○	○미군공여지 캠프에드워즈 부지는 폴리텍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주시민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캠프 에드워즈 부지는 현재 SPC [(주)에드워즈뉴시티)]를 설립하여 전체 사업부지의 약 18%를 공원·녹지 계획하는 친환경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미군공여지는 185,609㎡로 전체 사업부지의 약 27.4%를 차지하고 있음	미반영